

20. 형사절차(형사소송법)

-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의 공소제기 전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구속되었음을 의미한다.
-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이루어진 경우 1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였을 것이다.
-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인 1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형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국민참여 재판에서 법원의 판결이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경우라도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 국민참여 재판에서 법원의 판결이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경우 형의 선고시 판결서에는 그 이유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고된 형은 판사가 아닌 검사에 의해 집행된다.
- ▲검사는 수사기관이며, 기소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검사는 원고가 되고, 형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검사는 수사, 기소, 공판, 집행의 모든 형사 절차에 관여한다.
- ▲형사피고인으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검찰이 아닌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가석방제도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인 수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법원이 선고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재판중에 이루어질 수 없다.
-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자격은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가능하다.
- ▲보증금 납부 후 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보석 제도는 기소된 이후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다.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근거로 민사상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안처분은 범죄행위를 한 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대안적 제재수단으로 모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 수사를 종결한다.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재산상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 ▲배상명령제도는 상해 폭행 사기 등 법률에 규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진행 중인 재판의 2심 변론종결시까지(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불가함)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21. 소년사건

- ▲검사의 결정전 조사는 소년부 송치뿐 아니라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시행할 수 있다.
- ▲소년부 송치는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소년원 송치 처분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다.
- ▲검찰이 기소한 소년범에 대해 법원(형사부)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을 결정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므로 불복할 경우 항고 재항고 할 수 있다.
- ▲14세 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의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고, 13세 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9세 소년은 형법이나 소년법의 적용을 모두 받지 않는다.
-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에 의해 형사법원에서 처리되기도 하고 검사의 소년부 송치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도 할 수 있다.
- ▲범죄 소년의 경우 형사법원에서는 형벌을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형사법원에서 형벌 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릴수는 없다.
- ▲17세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13세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22. 근로관계법

-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으로서 사법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임금 관련 사항은 근로 계약의 중요 부분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황견계약은 근로 3권 중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갖는다.
- ▲부당해고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심판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중앙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려고 상당 기간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산하 행정기관이므로 중앙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동의할 수 있을 뿐이다.
-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 조항은 이로 인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된다.
-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우이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였으나 결렬된 경우 단체교섭권 침해로 볼 수 없다.

23. 국제관계의 흐름

-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이후 민족 단위의 독자적인 주권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 ▲강대국의 불참과 회원국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국제 분쟁 해결 능력 미흡 등 국제연맹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합이 창설되었다.
- ▲트루먼 독트린(미국의 봉쇄정책)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이 대립하는 양극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냉전이 형성되었다.
- ▲1969년 닉슨 독트린을 기점으로 공산진영과 자유 진영의 다원화와 비동맹 중립노선을 추구하는 제3세계의 위상 강화등으로 냉전이 완화되었다.
- ▲1989년 몰타선언으로 동유럽의 공산주의 포기, 1990년 독일 통일, 1991년 소련 해체 등으로 인해 냉전이 해체되었다.
- ▲냉전 해체 이후 민족, 종교, 인종 차이로 인한 갈등이 확대되어 국지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이념 대립은 감소하였다.
- ▲탈냉전 시대의 국제사회는 정치적인 이념대립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 ▲탈냉전 시대로 이동하면서 국제사회는 국제연합, 세계무역기구 등 정부간 국제기구와 국제적 시민단체,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행위 주체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24. 국제관계 이론

-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힘의 우위 확보를 통한 평화 실현을 중시하므로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 간 힘의 균형 중시)
-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는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고 국제법, 초국가적 행위주체인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실현을 중시하며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상호 의존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간주하여 국가 간 갈등에 대한 권위적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한다고 본다.
- ▲자유주의적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 모두 국제사회에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기구와 같은 초국가적 행위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 ▲현실주의는 국가 간 힘의 균형상태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26. 국제법

-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
-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조약의 비준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 ▲국제 관습법은 별도의 체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국 이외의 국가들에게도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비준된 조약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국제관습법은 국회의 동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조약 중에서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에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를 필수적이다.
- ▲법의 일반원칙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등이 있다.
- ▲조약은 포괄적 구속력이 아닌 체결 주체 간에만 효력을 갖는다.

27. 국제기구

-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의의 공통점은 첫째 둘다 의사 결정시 1국 1표의 원칙을 갖는다는 것이며, 둘째, 둘다 국제 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이다.
- ▲국제연합헌장은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국제 연합 가입 신청국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949년에 창설된 국제사법재판소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인의 국적이 다른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판결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군사력(평화유지군)을 사용하여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적 교류와 협력 증진을 담당하는 기구는 경제 사회 이사회이다.
-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국제 사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자국들이 합의하여 분쟁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 ▲국제연합총회에서 표결방식은 1국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한다.
-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방식은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상임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 힘의 논리가 반영됨을 알수 있다.
-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하고 새로운 가입국의 승인을 담당하는 것은 총회이다.
- ▲국제 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상임이사국은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으로 정해져 있다.
- ▲개인이 아닌 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